

I. 제조물책임법(안) 해설

글·강창경 연구위원
한국소비자보호원

1. 법안 작성의 기본 방향

첫째, 민법이나 소비자보호법 등 현행법의 개정보다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일반 특별법을 제정한다.

둘째, 책임 원칙은 과실 책임에서 결합책임으로 변경한다.

셋째, 유럽 연합의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유럽 지침을 가능한 한 반영하고, 미국과 일본의 경험을 고려하여 법의 내용을 정한다.

넷째,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면책의 사유를 넓게 인정한다.

2. 제조물책임법안(1994) 및 해설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의 구제를 도모하고, 이로써 소비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이 법의 목적은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있다. 법의 목적이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만 이 법에 의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품을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결합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는 이 법을 근거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결합 제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제대로 구

제할 수 있으면, 궁극적으로는 '소비 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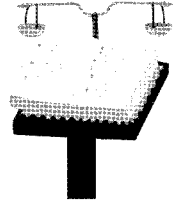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및 부동산 중 분양 공급 주택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제조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완성품의 제조자, 원재료·부품의 제조자
2. 제조물에 성명, 상호, 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또는 제조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3. 판매 또는 대여 등의 목적으로 제조물을 수입한 자
4. 제조물의 제조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물의 공급자

③ 이 법에서 '결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제조물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제조물의 성질,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
2.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당해 제조물의 사용
3. 당해 제조물의 유통된 기간



〈해설〉

제2조 1항에서는 제조물의 범위를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및 부동산 중 분양 공급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가공되지 않는 농산물(수산물, 축산물 등)은 생산자의 위험 분산 능력 및 배상 능력이 부족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제외시켰다.

용역이나 부동산은 제조물책임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반에게 분양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을 공급하는 관행이나 거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공급받는 자가 일일이 그 결함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주택 건축업자와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제2조 2항에서는 제조자와 수입업자 등을 제조물 책임을 지는 자로 정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은 제조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경우를 생각하여 책임질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제2조 3항에서는 결함이 무엇인가를 정하고 있다. 다만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결함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기 위함이다. 다만 이해 관계자나 법원이 결함을 비교적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제3조(손해배상책임) 제조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제3조는 제조물책임의 근거규정이며 기본 규정이다. 불법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50조와 비교하여 보면 이 조항은 민법의 특별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조항은 결함을 책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배상 청구자는 자연인인 사람임을 명확히 하였다. 확대손해가 아니고 제품 자체의 손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 계약법상 하자 담보 책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4조(면책 사유) 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자가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키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에는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 또는 그 결함이 그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
3. 당해 제조물의 결함이 법률이 정한 강제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이 강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물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는 사실
4. 제조자가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5. 부품 제조자의 경우는 그 부품을 조립한 완성품의 설계가 원인이 되어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또는 완성품 제조자의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해설〉

제4조에서는 여러가지 정책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면책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다. 제조자가 면책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책임을 면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면책 사유는 제조자가 실질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점, 결함의 원인을 제조자에게 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인정되고 있다. 개발 위험의 항변은 유통 시점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 알 수 없는 결함에까지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서 개발 위험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판단할 때의 과학 기술 수준이란 개별 제조업자 수준과 업계의 평균적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제조자로서 알 수 있는 최고의 과학 기술 지식의 수준을 말한다.

제5조(연대 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각자가 그 손해의 전부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진다.

〈해설〉

제5조는 오늘의 제품이 많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제품이 소비자의 손에 들어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때 결함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6조(결함의 존재 및 인과 관계의 추정) ① 제조물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그 결함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손해와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는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제6조는 결함과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한 규정이다. 피해자의 입증 곤란을 고려하여 결함 및 인과관계를 법원이 추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법원은 결함과 인과관계의 추정을 통하여 판결하여 왔으므로 이를 명문화한 데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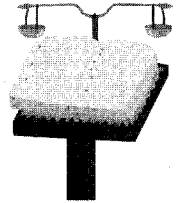
제7조(면책 특약의 금지) 이 법에 의한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무효로 한다.

〈해설〉

제7조는 소비자가 거래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불공정한 계약에 동의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한 규정이다. 이것은 강행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고 제조자가 소비자와 면책의 약정을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제8조(소멸 시효 등) ①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제조자를 안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시효가 소멸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권은 제조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유통시킨 때로부터 10년



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신체에 축적된 경우에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해설〉

제8조에서는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 결함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제조자가 손해를 야기한 상품을 유통시킨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책임 기간을 정한 것이다.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상품은 구실이 될 뿐만 아니라 보다 엄격한 안전 기준이 요구되고 과학 기술의 수준은 계속하여 발전한다. 또한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상품 개발 당시의 기록, 제조 당시의 기술 수준 등 증거가 소멸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제조자의 방어가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책임 추궁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되어 합리적인 제품개발 계획이나 경영계획의 수립이 어렵게 되는 등 제조자에게 부담이 적지 않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적당한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피해자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9조(과실 상계)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피해자가 결함이 있음을 알고 제조물을 사용한 때에는 법원은 손해 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해설〉

소비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과실을 상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어, 소비자의 책임을 고려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0조(관할) 이 법에 의한 소는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31조 및 제32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없다.

〈해설〉

일반적으로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피고는 상인이고, 이에 따라 소송관할은 상인의 영업소(회사 소송인 경우 재판 관할은 본점 소재지 지방 법원)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이 된다.

결국 소비자의 소송 수행에 불편함을 초래하여 소액 사건인 경우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 칙

제1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규정) 이 법은 법의 시행 후에 제조자가 유통시킨 제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해설〉

부칙은 기업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한편 이미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기업에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